

인증대행기관의 지정기준(제9조제1항 관련)

1. 조직 및 인력

가. 인증대행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인증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전담부서를 갖추고 다음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.

- 1) 인증평가업무 및 인증의 사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인증평가인력(이하 “평가원”이라 한다)을 5명 이상(상근 2명 이상) 보유하여야 한다.
- 2) 평가원은 제10조에 따라 운영되는 우수기업 인증평가분야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발급하는 같은 분야의 자격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.

나. 인증대행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인증대행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.

2. 인증업무규정

인증대행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인증업무규정을 작성·제출하여야 한다.

가. 인증의 절차 및 방법

나. 인증의 사후관리

다. 인증수수료 및 그 징수 방법

라. 평가원 준수사항 및 평가원에 대한 자체관리·감독 방안

마. 평가원 교육계획